

1. 단독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 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ㄷ.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 ㄹ.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 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 단독신청하는 등기로만 묶은 것은?

- ㄱ.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신청
- ㄷ.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 ㄹ.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지상권의 말소등기
- ㅁ.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멸실등기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ㄴ,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 등기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권자 대위신청의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관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4. 대위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토지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60일 이내에 그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5. 등기신청의 신청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지목, 면적, 접수번호
- ② 2026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
-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 ④ 등기관리자의 등기필정보
- 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6.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甲 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 공동가등기관자 중 일부의 가등기관자가 자기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한 경우

7.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ㄹ.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 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을 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8. 이의신청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② 등기관의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9.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ㄴ.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ㄷ. 저당권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ㄹ.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ㅁ.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ㄹ, ㅁ

10.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미등기 토지에 대해 행정관청의 소유권에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③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 ④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⑤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등기기록 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수증자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판결에 한한다.

12. 공동소유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에 대한 합유는 합유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갑구에 '합유'라는 뜻과 합유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

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④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③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④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록하여야 한다.

1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②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

인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⑤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5.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동담보 목적으로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 ⑤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16. 부기등기 할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전세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ㄷ.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ㄹ.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ㅁ.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ㄴ, ㄹ, ㅁ

17.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지역권설정등기
 ③ 저당권설정등기
 ④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⑤ 임차권설정등기

19.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닻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② 사과·배·밤·호두·곶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 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지목의 종류 중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깨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②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야외시장 공동우물
 ③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의 토지
 ④ 공항시설, 항만 시설부지 및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및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21. 경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ㄴ.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ㄷ.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ㄹ. 연결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가 경계이다.
 ㅁ.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토지의 경계, 경계점 표시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2. 토지의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m^2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한다.
 ②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의 필지 면적이 $1m^2$ 미만일 때에는 $1m^2$ 로 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필지 면적이 $0.1m^2$ 미만일 때에는 $0.1m^2$ 로 한다.
 ④ 1/600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측정의 결과 $456.253m^2$ 로 나왔다면 토지대장에는 $456.2m^2$ 로 등록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23.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ㄴ.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이동사유, 지적도면의 번호
 ㄷ.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
 ㄹ. 대지권등록부 - 건물의 명칭, 부호 및 부호도,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필지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ㅁ.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개별공시지가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4. 지적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를 포함)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 부동산종합공부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임야도에 서는 1/3,000, 1/6,000을 사용한다.

25.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지적측량의뢰서
- ㄴ.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ㅁ. 지적측량 준비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6.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 ①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③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저장권등기가 있는 경우
- ④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⑤ 甲 토지와 乙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27. 축척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ㄷ.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ㄹ.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28. 축척변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④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9.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토지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
의 통지가 있는 경우
- ㄴ.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ㄷ.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ㄹ.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ㅁ.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으로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 ⑤ ㄴ, ㅁ

30.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
항은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 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을 포함)에 따른 토
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 ㄷ.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
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
다.
- ㄹ.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
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
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ㅁ.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ㄴ, ㄷ,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31.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
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 ②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
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 ③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한 경우
- ④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32.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
을 하는 경우

- ②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입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⑤ ㉠, ㉡, ㉢, ㉠

33. 지적측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적기준점을 17개를 설치하면서 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기간11일, 검사기간은 10일이다.
- ④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4일로 정한 경우, 측량기간은 18일, 측량검사기간은 6일이다.
- ⑤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35.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 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4. 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만 묶은 것은?

-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 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한다.
- ㉢.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